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희 의원 발의]

의안번호	2475
------	------

발의일자 : 2024. 2. 2.

발 의 자 : 운영희 의원

찬 성 자 : 이인식 의원

1. 제안이유

상위법에 맞춰 주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하고 관련 규정을 재정비함으로써, 주민 접근성을 강화하며 제도를 통한 실질적인 권익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시민고충위원회로 변경 및 정의 재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4조).

다. 위원회의 구성 명시(안 제5조).

라. 위원장 직무 및 정례회의 재정비(안 제6조 및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 38조, 제39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첨부
- 2) 입법예고 : 2024. 2. 5. ~ 2024. 2.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로, “규정함”을 “규정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주민 권익 보호 및 상호 신뢰를 향상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 및 그 소속기관 등(이하 “구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으로 인해 주민의 권리침해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3. “구 소속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하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다. 구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4.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중전의 제2조)제목 외의 부분 중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한다.

제3조(중전의 제2조)의 제목 “(위원회 설치)”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로 한다.

제4조(중전의 제3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구정에 대한 감시 및 비위 시정 등에 대한 조치 권고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뢰하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

제5조(중전의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구성하며”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제5조(중전의 제4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호부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④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⑤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중전의 제5조)제1항 중 “대표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은 매월 1회 열리는 정례회의에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금천구</u> <u>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u> <u>운영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u>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신 설></u></p>	<p><u>서울특별시 금천구</u> <u>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u> <u>운영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 ----- -- <u>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u> ----- <u>규정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주민 권익보호 및 상호 신뢰를 향상하는 것</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u>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p> <p>1. “<u>고충민원</u>”이란 <u>서울특별시 금천구 및 그 소속기관 등(이하 “구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으로 인해 주</u></p>

민의 권리침해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3. “구 소속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하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다. 구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4.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8. (생략)

<신설>

9. (생략)

<신설>

제4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후단 신설>

<신설>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제4조(기능) -----

-----.

1. ~ 8. (현행과 같음)

9. 구정에 대한 감시 및 비위 시정 등에 대한 조치 권고

10. (현행 제9호와 같음)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뢰하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

제5조(위원회 구성) ① -----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

<신 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

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
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
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
·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
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
되, 연임할 수 없다.

④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
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
다.

⑤ 결원된 위원에 후임으로 위
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
시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

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생략)

제6조(회의) ①·② (생략)

<신설>

③·④ (생략)

제7조 ~ 제12조 (생략)

----- 대표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매월 1회 열리는 정례회의에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8조 ~ 제13조 (현행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7. 19.]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031호, 2019. 7. 19.,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및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가 자문)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
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사무기구) 구청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다만,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민원감사담당관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운영 지원) 구청장은 위원회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
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인) 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별도의 공인
을 가질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031호, 2019.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22.] [법률 제19268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9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권익위원회” 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권익위원회에 대하여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자로서 권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④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권익위원회가 고

충민원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